

Question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발주처로부터 발코니 및 계단 안전난간의 재질 및 규격에 관한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현재 우리 현장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길이 조절식 금속 파이프(지름 : 속대 42.7m/m, 겹대 48.6m/m, 두께 1.9T)를 사용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항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발주처 시방서상의 난간 재질 및 규격을 강관파이프(지름 48.6m/m, 두께 2.4T) 한가지로 규정지어 놓고 그외의 것은 규격미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강관파이프만 사용해야 하는지요.
2. 또한 조절식 난간대에 대한 가설자재 성능검정('안' 마크)이 없기 때문에 안전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난간기둥이나 비계설치용 강관에 대한 검정 기준('안' 마크)은 존재하고, 안전난간(강관 혹은 파이프 등)으로 사용하는 '금속제 파이프'에 대한 검정대상만 없는데 이 금속제 파이프에 대한 성능 검정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지요. [접수번호 : 10977561]

Answer

- 길이 조절식 금속파이프가 안전난간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2에 의거 안전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안전난간대에 대한 별도 성능 검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안전난간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 제14호 및 노동부 고시 제2003-18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위와같이 귀 현장에서 사용하는 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가 성능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름 약 4.8cm 금속제 파이프임을 감안한다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uestion

우리나라 현장의 안전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낙후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의 안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처가 있는지 문의드리며, 아직 없다면 신속히 만들어 현장근로자들의 보호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10930116]

Answer

현재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신고처는 별도로 없으나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경우 안전보호구 지급 및 미착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미착용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매립가스를 이용한 보일러 설비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는데 있어서 산업안전관리법 제49조에 의거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접수번호 : 10964407]

1. 매립가스 조성성분

- ㉠ 메탄 : 20~55 vol% ㉡ 이산화탄소 : 25~50 vol% ㉢ 산소 : 0.1~3.0 vol%
- ㉣ 질소 : 9.4~27.3 vol% ㉤ 수소 : 2.8~3.7 vol%

2. 보일러(50% X 2) 중 각 보일러로 공급되는 매립가스량 : 25,500Nm³/hr

3. 보일러 규격

- ㉠ 보일러 수량 : 2대 ㉡ 증기유량 : 106.2 Ton/h
- ㉢ 증기압력 : 100 kg/cm²g ㉣ 증기온도 : 539 °C

4. 매립가스 승압 Blower 규격

- ㉠ 수량 : 50% X 3대 ㉡ 형식 : 수평 원심형
- ㉢ 용량 : 25500 Nm³/h ㉣ 정압 : 6000 mmH₂O


Answer

귀 질의의 내용을 검토한 바, 매립가스의 주성분이 메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5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가스에 해당되며 사용하는 가연성가스의 취급량이 5톤/일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해당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제출 대상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Question

건설업체 안전담당자입니다. 혹서기에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휴게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설내 근로자들이 시원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얼음을 저장할 수 있는 아이스 박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접수번호 : 10922657]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혹서기에 근로자의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에 한하고 있으므로,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노동부(www.molab.go.kr) 전자민원창구 질의응답코너에서 발췌한 자료임.